

가상자산 기부관리 시행세칙

제정 2026. 5. 1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시행세칙은 가상자산 기부관리 규정에 의거 기부접수, 처분 및 운용, 내부 점검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상자산”이라 함은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.
2. “실명계정”이라 함은 가상자산거래소 및 은행 등이 실제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의미한다.
3. “내부통제기준”이라 함은 대학이 가상자산 기부의 접수, 보관, 처분(현금화) 및 회계·세무처리 등에 관하여 마련하는 절차·기준을 말한다.
4. “가상자산심의위원회”라 함은 본 대학이 설치한 기구로, 기부받는 가상자산의 적정성, 처분계획, 내부통제체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대학이 가상자산 기부를 접수하거나 가상자산 실명계정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제 2 장 개 요

제4조(실명계정 운영의 기본원칙) 계정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

1. 대학은 가상자산 수령을 위해 지정된 거래소 계정을 마련해야 하며, 해당 계정은 본 대학 명의로 개설된 실명확인 계정이어야 한다.
2. 대학은 가상자산 기부 수령계정과 처분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.
3. 대학은 가상자산 수령 후 지체 없이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현금화 시점, 방식, 책임부서 등을 사전에 가상자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.
4. 대학은 실명계정으로의 자금입·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, 회계처리·세무처리를 적시에 수행해야 한다.

5. 실명계정의 운영 및 변경사항 등은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대상 자료로 보관한다.

제 3 장 가상자산 기부 관련 운영 기준

제5조(기부접수 및 절차) ① 기부자(개인 또는 법인)가 가상자산 기부를 제안할 경우, 대학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

1. 기부자의 신원(실명 여부), 주소·연락처 등 기본정보 및 기부자의 실명 확인 절차 이행 여부
2. 기부목적 및 기부대상 가상자산 종류
3. 3개 이상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
4. 기부가 대상 대학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와 적합한지 여부(기부 적정성)

② 기부제안이 접수되면, 조속히 가상자산심의위원회에 기부심의안을 제출한다. 기부심의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

1. 기부자 정보 및 기부내역(자산명, 수량, 예상가치 등)
2. 기부된 가상자산의 수령계정, 처분(현금화) 계획 및 책임부서
3. 회계·세무처리 예정 방식
4.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위험요인 평가 및 대응계획
5.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

③ 기부자는 「별표 1」의 가상자산 기부자금 원천 및 거래목적 확인서 및 「별표 2」의 가상자산 기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가상자산심의위원회는 기부 적합 여부, 수령 후 처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한다.

제6조(수령 및 보관) 수령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

- ① 대학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로 가상자산을 수령한다
- ② 수령된 가상자산은 즉시 내부관리를 위해 ‘가상자산 기부관리계정’으로 이관하고, 일반 운영계정과 분리 관리한다
- ③ 가상자산 수령 후에는 전표, 내역서류 등을 즉시 작성하여 기록하고, 외부 감사·내부감사 대상이 되도록 한다
- ④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계정잔액·이전내역 등을 점검하고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체계를 운영해야 한다

제7조(처분 및 운용) 처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화 한다
 1. 원칙: 수령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

- 2. 예외: 시장 급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심의위원회 승인 후 최대 30일 연장 가능
- 3. 현금화 지연 시 사유 및 일별 시가 평가 기록
- ② 현금화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.
 - 1. 처분일자, 처분수량, 처분가격, 처분수수료 및 순현금화금액
 - 2. 현금화 이후 입금된 은행계좌 및 계좌번호
 - 3. 해당 자금의 활용목적 및 지출계획
- ③ 현금화된 자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대학 내부 회계시스템에 따라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, 활용내역은 기부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.
- ④ 운용된 자금은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.

- 제8조(내부점검 및 보고) ① 가상자산 기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연 1회 이상 내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- ② 내부점검 결과 및 관련 리스크 점검사항은 가상자산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, 필요 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 - ③ 가상자산 기부 관련 연간 처분실적, 기부유형, 금액, 운용내역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기부자·후원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.
 - ④ 가상자산 기부 접수·현금화 관련 주요 부정·비리 발생 시 즉시 가상자산심의위원회 및 총장에게 보고하고, 해당 사실을 은행·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.

- 제9조(위험관리 및 고객확인) ① 대학은 기부자로부터 가상자산이 신청될 때 「별표1」에 따라 그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을 확인한다.
- ② 기부자가 익명성 높은 제3자 거래소를 거쳤거나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경우, 즉시 추가 검토 또는 접수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 - ③ 대학은 기부자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할 경우 고객확인 주기를 단축하거나 별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.

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26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가상자산 기부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확인서

가상자산 기부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확인서

I. 기부자 기본정보

항목	내용
성명(또는 법인명)	
생년월일 / 법인등록번호	
주소 / 본점소재지	
연락처	전화: / 이메일:
신분증 /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 (사유:)
실명확인 입출금계좌번호	
가상자산 거래소명	(예: 업비트 / 빗썸 / 코빗 등)
가상자산 지갑 주소 (From Address)	
기부대상	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(세부 목적기금:)
기부금액(원화 환산)	₩ 원 (환산기준일:)

II. 자금원천 확인

기부금의 출처가 자금세탁, 범죄수익, 제3자 명의 기부 등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해당되는 항목에 √ 표시하고,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

자금원천 구분	선택(√)	세부내용(해당 시 기입)
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직접매수		취득자금원천(근로소득, 사업소득, 투자소득 등)
<input type="checkbox"/> 채굴		
<input type="checkbox"/> 이전 기부/증여 수령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구체적으로 기재)		
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취득 시기		년 월 일

본인은 상기 기부금의 자금원천이 합법적인 소득 또는 자산이며,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서명: _____ (날인 또는 서명)

작성일: _____년 ____월 ____일

Ⅲ. 거래목적 확인

항목	내용
기부의 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 발전 일반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기금() <input type="checkbox"/> 장학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기부 동기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의 사회환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졸업생/교직원 참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 사회공헌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사업 후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기부 자산의 취득 경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보유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자로부터 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소 매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향후 환원·교환·매매 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구체적으로 기입:)
거래일자 및 시점	(예: 2025.05.15 / 10:30 KST)
거래 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소 통한 전송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지갑 직접전송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수령 지갑주소 (POSTECH 지정)	

IV. 개인정보 및 사실확인 동의

본인은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"대학")가 「특정금융정보법」, 「자금세탁방지 관련 시행세칙」 및 「대학 발전기금 가상자산 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」에 따라 본 확인서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.

본인은 가상자산 기부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학이 필요시 금융기관·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확인·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.

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불법 자금 사용이 확인될 경우, 대학은 해당 기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서명: _____

작성일: _____년 ____월 ____일

V. 대학 확인

확인항목	담당자 기재	확인자 서명
실명확인 계좌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	
자금원천 적정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확인 필요	
거래목적의 합리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확인 필요	
가상자산심의위원회 검토일	(YYYY.MM.DD)	
승인 결과	<input type="checkbox"/> 승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류 <input type="checkbox"/> 반려	
담당자(발전기금소관부서)		
부서장(발전기금소관부서 팀장)		

[첨부 서류]

신분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사본

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주소 증빙(화면 캡처 등)

거래내역서(최근 3개월분)

기타 자금원천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증명, 투자내역 등)

※ 본 확인서는 「금융위원회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」 및 「POSTECH 발전기금 가상자산 관리규정」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.

본 서류는 발전기금소관부서 및 가상자산심의위원회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.

[별표 2] 가상자산 기부신청서

가상자산 기부신청서

1. 기부자 기본정보

항목	내용
성명(또는 법인명)	
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)	
주소(본점 또는 거주지)	
연락처 / 이메일	
신분증 종류 및 번호	
(법인의 경우) 대표자 성명 및 직위	

2. 기부 내역

항목	내용
기부대상(학과/프로그램명)	
기부 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기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기부(프로그램명:_____)
가상자산 종류 *3개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며, DAXA 홈페이지에 공시된 가상자산에 한함	예: BTC / ETH / XRP 등
수량 및 추정가치(원화 기준)	
기부일(전송일자)	
가상자산 출처	본인직접매수, 채굴, 이전 수령 등 구체적으로 기재
수령지갑 주소	POSTECH 지정 수령주소: _____
처분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즉시 현금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 기간 보유 후 처분(사유:_____)

3. 기부 관련 확인사항 (필수 체크)

기부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·동의합니다.

- 본 기부는 자금세탁·범죄자금·제3자 위탁자금과 무관하며, 자금의 출처는 합법적입니다.
- 본인은 기부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보유자(소유자)입니다.
- POSTECH 발전기금이 가상자산을 수령·처분·관리함에 있어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, 「자금세탁방지법」 및 대학 내부규정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.
- POSTECH은 본 기부금의 수령·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변동, 시세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POSTECH이 금융기관 및 거래소에 실명확인·자금원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됩니다.

가상자산의 특성상 현금화 이후에는 기부 철회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.

4. 관계확인

가. 기부자와 가상자산 발행 주체 간의 관계

해당없음

투자자

임직원

기타(구체적으로 기재: _____)

나. 기부자와 대학 간의 관계

해당없음

교직원

교직원의 친족

기타(구체적으로 기재: _____)

※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 기부는 접수될 수 없습니다.

5. 기부 시 이용 거래소

가. 거래소 명칭:

나. 거래소 계정 명의자:

※반드시 기부자 본인 명의의 실명 계정이어야 함.

6.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제공 동의

기부자는 POSTECH 발전기금이 금융기관(거래소 포함), 감사기관, 관계 행정기관에 아래 정보를 제공·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제공항목: 성명, 연락처, 기부내역, 자금원천 증빙, 지갑주소

제공목적: 실명확인, 자금원천확인, 회계감사 및 법정보고

7. 서명

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허위 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.

구분	서명
기부자(개인 또는 법인대표)	(서명 또는 인)
날짜	년 월 일
